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지역산업과 진종욱 과장 (044-203-4420), 정민구 주무관(044-203-2247)

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·공포

- 테크노파크,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·일자리 진흥기관으로 도약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개정안이 4. 29.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힘.

□ 개정된 산업 기술 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시·도별 테크노파크가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, 『지역 산업·일자리 진흥기관』으로 개편·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

○ 테크노파크의 사업 범위를 지역 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, 지역 연구개발사업의 조사·분석·성과평가 및 발굴·기획 등 지역 산업정책 관련 사업 등으로 규정하여,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산업·일자리 진흥을 위한 테크노파크의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.

○ 또한 테크노파크의 부실경영 및 비리예방을 위해 산업부의 관리·감독을 강화하고, 관리·감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음.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임.

○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반 운영을 통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, 테크노파크 운영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갈 방침임.

□ 이번「산업 기술 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개정으로, 정부와 지자체의 지역 사업이 효과적으로 지역 경제에 적용되고, 지역 산업·일자리 진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정민구 주무관(☎ 044-203-4427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테크노파크 현황

□ 설립목적

○ 지역산업육성 전략수립 및 지역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진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부와 지자체 등이 공동 출연하여 구축·운영

○ 기업·대학·연구소 등의 인적·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

- 기업·대학·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

□ 구축현황

○ 테크노파크 조성은 1단계로 '98년 6개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, 2단계로 '00년부터 12개를 설립하여 총 18개 운영 중

지정시기	'97.12	'00.12	'03.12	'04.12	'05.3	'05.9	'08.1	'10.1
대상지역	인천, 경기, 대구, 경북, 광주, 충남	부산, 포항	충북, 전북, 전남, 강원	경남, 울산	경기대진	서울	대전	제주

□ 주요 기능

○ 지역산업육성의 거점기관으로 지역 사업 기획 및 산·학·연 연계 등 통합적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 내 기술 기업 육성

- (정책기획) 연차별 지역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산업통계 조사 등
- (산학연 클러스터) 특화산업 중심으로 연구소, 대학, 지원기관間 네트워크화 지원
- (창업후보육) Post-BI단계 기업들의 본격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공간 제공 및 각종 기업지원서비스 실시
- (기업지원) 지역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R&D, 교육훈련, 마케팅, 공용장비 제공, 투자유치 지원, 애로해소 등 실시

참고 2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주요 개정 내용

○ TP에 대한 관리·감독 등에 관하여 이법을 우선 적용

○ TP의 사업범위*를 명확히 하고, TP가 지역지원사업 정보의 조사·공개 등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* 지역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,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·분석·성과평가 및 발굴·기획 등 지역산업정책 관련 사업 등

○ TP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자금 및 성과급의 차등 지원 근거 마련

○ 기재부 요청을 반영하여 국유재산 특례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이관하고, TP가 임대한 부지의 계약 갱신이 가능하도록 임대차보호 규정 신설

○ 장비 활용 제고를 위해 사립학교법인이 국가·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연구시설 등을 TP에게 이전·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○ TP에 대한 시정·명령 등 산업부의 관리·감독을 강화
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TP의 인사, 예산, 조직 등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정관 변경 및 원장 취임시 산업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규정
- 기본재산의 변경, 채무부담, 채권의 포기, 차입 시 산업부장관의 허가 절차 규정
- 산업부 장관이 TP의 회계기준 및 방식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산업부의 TP에 대한 명시적 관리감독을 규정하고, 위법·부당한 업무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신설
- 산업부장관이 TP가 부당한 사업 수행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권한 규정
- TP 임직원이 법령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시정요구를 기피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징계 요구권 규정
- 산업부의 시정 조치 불이행 및 이사회의 원장 취임 승인 취소 요청 시 산업부장관의 원장 취임 승인 취소 권한 신설